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04. 06. .
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개정이유

- 지방분권, 균형발전, 지역혁신업무 등 신규행정수요에 효과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을 증원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행정기관의 정원 “797”을 “830으로 함. (안제2조제1호)
- 총계란 “813”를 “846”으로 함. (안제2조제2호)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797”을 “830”으로 하고, 동조제2호중 “813”을 “846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행정기관의 정원 : <u>797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 <hr style="width: 20%; margin-left: 0;"/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총 계 : <u>813명</u></p> 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행정기관의 정원 : <u>830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hr style="width: 20%; margin-left: 0;"/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총 계 : <u>846명</u></p> |